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 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12. 17
시민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1월 4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4년 11월 10일
- 다. 상정일자 : 제30회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제2차 시민보사위원회('94. 12. 17)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불우아동의 결연, 후원자 개방에 적극 참여함과 아울러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사업을 통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협의회는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안 제2조)
- 2) 협의회는 임무를 정함.(안 제4조)
- 3) 협의회는 회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5조)
- 4) 협의회는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범위안에서 협의회 활동비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6조)
- 5) 협의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은 거쳐 회장이 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첫째, 우리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제정배경은, '93. 8. 30 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법규정비 계획과 '94. 7. 8 서울특별시가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 중

아동위원추천위원회와 아동위원연합회의가 폐지되고 구 아동위원협의회 관련조항의 삭제와 서울특별시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아동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었고, 아동위원의 임무, 정수, 위촉, 임기, 수당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조례로 정하는 한편, 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기능, 회의, 여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임.

둘째, 영등포구청장이 입안한 조례내용에 대하여는,

제1조(목적)와 제4조(협의회의 임무)는 조례문안 내용상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 영등포구청장이 입안한 제1조 목적은,

내용이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제4조와 내용이 중복되는 표현이므로 간결하게 궁극적 목적인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라는 대전제를 함축성있게 표현하고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목적이므로

제1조(목적)을 『이 조례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고,

(2) 영등포구청장이 입안 제4조(협의회의 임무)

라는 표현보다는 『협의회의 기능』이라고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여타사항은 구청장이 입안한 원안대로 제정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수정안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4. 12. 17. 김형기의원의 1인 발의

나. 수정이유

- 1) 제1조(목적)은 내용이 제4조와 중복되는 표현이므로 간결하게 궁극적인 목적인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라는 대전제를 함축성있게 표현하고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목적이므로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고,

2) 제4조(협의회의 임무)라는 표현보다는 “협의회의 기능”이라고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됨.

다. 수정 주요골자

제1조(목적)을 「이 조례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간결하게 수정하고,

제4조(협의회의 임무)를 「협의회의 기능」이라고 수정.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회 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63호
----------	----------------

제출년월일 : 1994. 12. 17.

제 출 자 : 김형기의원의외1인

1. 수정이유

가. 제1조(목적)은 내용이 제4조와 중복되는 표현이므로 간결하게 궁극적인 목적인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라는 대전제를 함축성있게 표현하고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목적이므로 제1조(목적)을 “이 조례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고,

나. 제4조(협의회의 임무)라는 표현보다는 “협의회의 기능”이라고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됨.

2. 수정 주요골자

제1조(목적)을 「이 조례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간결하고 수정하고,

제4조(협의회의 임무)를 「협의회의 기능」이라고 수정.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위원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불우아동의 결연 후원자 개발에 적극 참여함과 아울러 요보호 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사업을 통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소속하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임무)		제4조(협의회의 기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회의 조례(안)

의안 번호	관 련 263호
----------	-------------

제출년월일 : 199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불우아동의 결연, 후원자 개발에 적극 참여함과 아울러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사업을 통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협의회는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안 제2조)
- 나. 협의회는 임무를 정함(안 제4조)
- 다.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5조)
- 라. 협의회는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범위안에서 협의회 활동비용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6조)
- 마. 협의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함.(안 제7조)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07조
- 나.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회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강화하여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불우아동의 결연, 후원자 개발에 적극 참여함과 아울러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사업을 통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과 임기) ①협의회는 각동의 아동위원 2인으로 구성하되 인구 3만 이상의 동은 3명으로 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은 각각 1인을 두며 각각 호선한다.

③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장등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회의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협의회의 임무) ①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아동위원 활동의 지원
-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 3.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 4.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 5. 아동 관련 행사 주관
- 6. 불우아동의 결연, 후원사업
- 7.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협의회 활동비 지급) 협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 활동에 따른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아동위원으로 본다.